

#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소관부서 :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

제정 2013· 3· 11 조례 제 974호  
 일부개정 2014· 8· 8 조례 제1059호  
 일부개정 2016· 5· 12 조례 제1231호  
 일부개정 2018· 3· 28 조례 제1375호  
 일부개정 2019· 3· 8 조례 제1471호  
 일부개정 2019· 7· 1 조례 제1505호  
 (이천시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조례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22· 9· 30 조례 제1863호  
 일부개정 2023· 7· 5 조례 제1948호  
 일부개정 2023· 9· 27 조례 제198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3· 12· 22 조례 제2034호  
 일부개정 2024· 9· 30 조례 제215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민에게 농촌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와 이천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천농업테마공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7, 2023· 12· 22>

1. “이용자”란 이천농업테마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에 입장하여 관람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시설”이란 공원의 시설 및 부속시설, 설비·장비 등을 말한다.
3. “숙박시설”이란 공원 내에 있는 시설 중 펜션, 이동식 캐빈하우스 및 야영장을 말한다.
4. “관리·운영자”란 공원 내에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장으로부터 그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어린이”란 7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 또는 초등학교생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생을 말한다.

7.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8.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 (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9. “성수기”란 7월에서 8월까지의 전 기간을 말한다.
10.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9·30]

**제3조(위치)** 공원은 이천시 모가면 공원로 48에 둔다. <개정 2014·8·8>

**제4조(업무)** 공원에서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8>

1. 공원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원 공공시설의 관리
3. 임대료 및 사용료 등의 징수
4. 그 밖에 공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운영)** ① 시장이 공원 및 시설의 관리·운영을 원칙적으로 한다. <개정 2019·3·8>

- ② 시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 및 시설의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나 목적의 범위에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3·8>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3·8>

[제목개정 2019·3·8]

**제6조(이용시간 및 사용료의 징수)** ① 공원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하절기(4월~10월) : 09:30~18:30
  2. 동절기(11월~3월) : 09:30~17:00
- ② 숙박시설 이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9·3·8, 개정 2024·9·30>
- ③ 시설 사용료는 입실 전에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9·3·8>

④ 제1항 및 제2항의 이용 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3·8>

[제목개정 2019·3·8]

**제7조(휴무일)** 공원 및 숙박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성수기(7월~8월)에는 휴무 없이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무일로 한다.
2. 1월 1일, 설날·추석
3. 이천쌀문화축제 기간 및 축제장 정비에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휴무일. 이 경우, 시장은 임시휴무일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9·30]

**제8조(입장 및 행위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자 또는 술에 만취한 사람
2. 보호자와 함께하지 않은 5세 이하의 어린이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의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공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원의 자연경관에 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2. 공원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3. 미풍양속에 반하는 유흥 행위
4.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5. 허가 없이 이용자를 상대로 하는 영업 행위

6. 그 밖에 시장이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게시사항)** 시장은 공원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이용시간, 휴무일,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의 공지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8>

**제10조(편의시설의 설치 운영)**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공원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3·8>

1. 식당
2. 숙박시설
3. 가게
4. 직거래 장터
5.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공원 관리자가 인정하는 시설

**제11조(손해배상 등)** 시장은 고의나 과실로 각종시설 및 산림, 식생 등을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직거래장터 운영)** ① 시장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우수농산물의 판매를 목적으로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직거래장터의 참가자는 이천시민이며, 시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수입금의 처리)** ① 시장은 임대료, 체험활동비 및 대관료 등의 징수로 발생하는 수입금을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 수입금은 매월 10일 세외수입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3·8]

**제13조의2(대관허가)** ① 시장은 공원의 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원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대관 할 수 있는 공원의 시설물(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2>

1. 풍년축제마당
2. 도시근교 치유 농업 쉼터
3. 세미나실

4. 그 밖의 옥내·외 공간

③ 공원시설을 대관 받아 전시·행사 등을 하는 사람(이하 “대관하는 사람”이라 한다)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8·8]

**제13조의3(사용시간)** 대관하는 사람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6조에 따른 이용시간 내로 한다. <개정 2022·9·30>

[본조신설 2014·8·8]

**제13조의4(대관허가 신청)** ① 제13조의2제2항제1호와 제2호의 시설물을 대관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대관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2023·12·22>

1. 행사계획서 1부
2. 원상복구계획서 1부

② 제13조의2제2항제3호와 제4호의 시설물을 대관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대관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2>

1. 행사계획서 1부
2. 원상복구계획서 1부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본조신설 2014·8·8]

**제13조의5(대관료)** ① 대관하는 사람은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표 2에 따른 대관료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하는 사람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사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2024·9·30>

②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공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거나 사용예정일 6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 전액 환불
  2.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 위약금(10퍼센트)을 공제한 잔액 환불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대관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관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9·30>

[본조신설 2014·8·8]

**제13조의6(대관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1. 공익 또는 사회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원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13조의7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관허가의 취소사실이 있었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신설 2014·8·8]

**제13조의7(대관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대관의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후단삭제 2016·5·12>

1. 재해·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관허가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본조신설 2014·8·8]

**제13조의8(대관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2024·9·30>

1. 시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시 농업인 단체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농업테마공원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8·8]

[제목개정 2022·9·30]

**제13조의9(체험료 등)** ① 시장은 공원 내 현장 체험활동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험실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료는 농업테마공원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8, 2022·9·30>

[본조신설 2014·8·8]

**제13조의10(숙박시설의 이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숙박시설 이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할 때
2. 숙박시설을 개·보수할 때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숙박시설 이용이 어려울 때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천쌀문화축제 개최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 제한 기간 내에 행사 관계자에 한하여 숙박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2>

[본조신설 2019·3·8]

**제13조의11(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 <개정 2019·7·1, 2022·9·30, 2023·9·27, 단서신설 2023·12·22, 개정 2024·9·3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4. 이천시 주둔 군부대 소속으로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군인

5. 사용일 현재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6. 보호자를 동반한 6세 미만의 영유아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입장 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단,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감면 대상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4·9·30>

③ 제1항 각 호의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한다. <신설 2024·9·30>

[본조신설 2019·3·8]

**제13조의12(예약)** ① 숙박시설 이용은 사전예약제와 당일 이용권 구매를 병행하여 운영하되, 예약은 온라인으로 예약 접수하며, 매월 1일부터 익월 말일까지 예약접수할 수 있다.

② 사전예약의 경우 이용권은 이용당일 교부하며, 사전예약에 따른 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숙박업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확대 제공을 위하여 숙박시설 중 3분의 1 범위 안에서 이천시민우선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12·22>

[본조신설 2019·3·8]

**제13조의13(예약자확인)**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운영자에게 예약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3·8]

**제13조의14(시설 사용권의 양도 및 전매금지)**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숙박시설 관리·운영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3·8]

**제13조의15(보험가입)** 시장은 공원 내 시설에서의 사고와 공원 시설과 관련된 시설 이용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



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에 대해서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본조신설 2019·3·8]

**제13조의16(예비객실의 운영)** ① 시장은 이천쌀문화축제 및 기타 공원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비객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객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숙박시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천쌀문화축제 기간 및 축제장 정비 등에 필요한 경우
4. 공원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주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말 및 휴무일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예비객실을 운영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2]

**제14조(공원운영위원회)** ①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8·3·28>

④ 위원은 농경전통문화에 조예가 깊은 해당 분야 문화계 인사 및 전문가, 농업인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이때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4·8·8, 2018·3·28>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삭제 <2018·3·28>

**제15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원 활성화를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구입대상 자료 등에 대한 심사평가 및 감정에 관한 사항
4. 자료 등의 구입 계획에 관한 사항
5. 기증·기탁 자료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에서 자료 등의 감정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감정평가 결과를 기재한 감정평가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3·28]

**제1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농업진흥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업무 담당이 된다.

② 서기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 회의록을 작성 보고한다.

[전문개정 2018·3·28]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위촉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4. 공원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제19조** 삭제 <2018·3·28>

**제2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28>

**제21조(자료 등의 구입)** ① 시장은 공원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한다. <개정 2014·8·8, 2018·3·28, 2022·9·30>

② 자료 등의 구입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개 구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증한 사람에게는 기증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한 사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 상당하는 기증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8, 2018·3·28, 2022·9·30>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8·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8 조례 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12 조례 제1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28 조례 제1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8 조례 제1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 조례 제1505호, 이천시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9·30 조례 제1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부칙 <2023·7·5 조례 제1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7 조례 제198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2 조례 제2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9·30 조례 제2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중전 별표 2에서 이동 및 개정 2024·9·30>

**숙박시설 사용료 및 이용시간표**

(제6조제2항 관련)

○ 시설 사용료

(단위: 원/1박)

시설별	기준인원 (연령무관)	주말	평일		비고
			성수기 (7~8월)	비수기	
펜션	4인	100,000	100,000	80,000	▪주차요금 무료
	6인	120,000	120,000	100,000	
이동식 캐빈하우스	4인	110,000	110,000	90,000	▪전기요금 포함
야영장	4인	30,000	30,000	30,000	

※ 기준인원 초과 시 추가요금 발생(추가인원요금 참조)

※ 본 별표에 따른 사용료·사용요금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임.

※ “평일”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함. 단, 공휴일 전날은 제외한다.

※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름.

○ 할인율

구 분	할인율	비 고
국가보훈 및 민주유공	50%	1인 1실에 한함
장애인	50%	
이천시민	50%	
이천시 군부대 군인	50%	

※ 할인대상자는 신분증 및 할인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할인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

※ 이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할인은 1개 시설에만 적용

○ 추가인원요금 및 이용시간

시설별	추가인원	1인당 인원추가요금(1박)	
		어린이	청소년/성인
펜션	4인용 : 최대 2명	5,000원	10,000원
	6인용 : 최대 3명		
야영장	최대 2명		
※ 이동식 캐빈하우스는 추가인원 없음. ※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추가요금 면제(단, 최대 추가인원 수에는 포함) ※ 숙박시설 할인율 미적용			

※ 시설별 1일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펜션 및 이동식 캐빈하우스 : 입실일 15:00부터 익일 11:00까지
- 야영장 : 입실일 15:00부터 익일 12:00까지

※ 숙박시설 이용시간 종료 후 퇴실이 지체될 경우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 3시간 이하 지체 : 시설별 사용료의 30%
- 3시간 초과 지체 : 시설별 사용료의 100%

[별표 2] <중전 별표 1에서 이동 2024·9·30>

이천농업테마공원 대관료(사용료)

(제13조의5 관련)

(단위 : 원)

구 분		대관료/1회	단가/시간	부속설비	비 고
세미나실	50석	100,000	12,500/시간	빔프로젝트 앰프 사용료 포함	부가세를 포함 하지 않은 금액임

(주의사항)

1. 이천농업테마공원 그 밖의 시설 등의 대관료(사용료)는 세미나실의 대관료(사용료)를 준용하되, 해당 시설의 면적으로 비례하여 환산한다.
2. 세미나실의 1회 대관 시 2시간을 기본시간으로 적용하고, 초과시간 당 시간별 단가 (12,500원)를 추가 적용한다.
3. 기본시간 초과 이용 시 한 시간 미만은 한 시간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2. 22>

대관허가 신청서  
(제13조의4 관련)

신청인	단체명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용목적 (행사명 등)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대관시설	기본시설	① 풍년축제마당 ( ) ② 도시근교 치유 농업 쉼터 ( ) ③ 세미나실 ( ) ④ 그 밖의 옥내·외시설 ( )		
	부속설비			
기타				
비고		붙임 : 행사계획서 1부 원상복구계획서 1부.		
1.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제13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이천농업테마공원 시설의 대관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대관허가를 취소할 경우 10퍼센트의 위약금을 지불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이천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3·12·22>

예비객실 운영 관리대장  
(제13조의16 관련)

연번	일시	객실명	사 용 자	연 락 처	사 유	결 재	
						담당	팀장